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41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1년 8월 10일 김경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안번호 257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안번호 258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2021년 8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 교육의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추가하고 해당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신설).
- 보호자 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을 추가하고, 시장이 보호자 교육을 의무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제3항 중 “인권 등”을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u>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u> <u>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u> 또는 전부를 예산의 <u>범위 안에</u> 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4조(교육)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 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u>인권 등</u> 에 대한 교육을 <u>실시할 수 있</u> <u>다.</u></p> <p>④·⑤ (생략)</p>	<p>제22조(비용의 보조) ① ----- ----- <u>다음</u> ----- ----- ----- <u>범위</u>-----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들의</u> <u>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u> <u>소요되는 비용</u></p> <p>12. (현행 제11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 <u>인권 및 아동학대 예</u> <u>방에</u> ----- <u>실</u> <u>시하여야 한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